<의안번호 제2006-15호>

- 거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_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 2006. 4. 13

나. 제출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06. 4. 13

2. 제정이유

- 지방재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 2006. 1. 1일 부터 「지방 재정법」이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60조에 의거 재정운용 상황을 주민에게 알리는 「지방재정공시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 현행「거창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를 폐지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제70조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토록 위임된「거창군 재정공시 심의위원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위원회 구성(안 제2조).

- 구성 인원 :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
 -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 관계 민간전문가 등
- 임 기 : 2년(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 나. 주요 심의사항(안 제3조).

-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 지방채·일시차입금 등 채무의 현재액, 채권 관리현황
 - 기금운용 현황,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등
- 주민숙원사업 추진실적 등 특수한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 여부
- 다. 참석 수당 및 여비 지급(안 제7조).
- 예산의 범위안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거 지급

4. 참고사항

- 관련법령:「지방재정법」제60조(재정운용상황의 공시 등) 및 「지 방재정법 시행령」제70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 운영조례 표준안 : 도 예산담당관-1097호(2006. 2. 22)
- 입법예고('06. 1. 31 ~ 2. 19) 결과 : 의견제출 없음.

5.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재정운용상황을 회계연 도마다 1회 이상 주민에게 공시하여 지방재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코자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의 심의 를 위하여「지방재정법 시행령」제70조에 의거 '지방재정공 시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 는 것으로

- 동 조례안은 재정운영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제69조의 재정운용상황의 공시방법, 공시시기 등의 객관적인 절차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주는 일련의 행위로, 운영조례 표준안이 행자부에서 통보되어 동 조례안의 시행과 동시에 현행 「거창군 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를 폐지하고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토록 위임된「거창군 재정공시 심의위원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려는 것으로, 형식이나체계상 문제와 동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예고 사항 등을 철저히 이행하여 상위법령 저촉시항이나 관련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 또한 동 조례안 제3조(위원회 운영)에서는 지방재정법이 전면개정됨에 따라 현재 운용중인「거창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의 제정근거인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를 재정비한 사례는 관련규정에 별다른 저촉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 관련법령 발췌

≪지방재정법≫

제60조 (재정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 1.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 2.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 3. 지방채·일시차입금 등 채무의 현재액
- 4. 채권관리현황
- 5. 기금운용현황
- 6.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7.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재정정보
- 8.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운용상황의 공시방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 (재정운용상황의 공시방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하는 경우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공통공시"라 한다)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상항에 대한 공시(이하 "특수공시"라 한다)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②공통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법 제60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
- 2. 지방재정분석·진단의 결과
- 3.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 4. 그 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③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정한다.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당해 지역을 배포지역으로 하는 일간지 등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 ⑤그 밖에 공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69조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시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는 매년 8월에 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결손으로 인하여 실행예산을 운용한 경우 또는 다음 연도 수입을 앞당기어 충당·사용한 경우 등 새로운 수요발생시 수시로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할 수 있다.

제70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공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공시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관계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우영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1조 (재정운용상황의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한 후 1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제72조 (공시에 대한 조치 등)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재정운용상황 공시결과를 분석·평가하여 적절한 지도를 하거나 재정분석에 반영할 수 있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평가결과 그 내용이 미흡하여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지방자치단체에 다시 공시하도록 권고하고, 공시한 결과가 미흡하거나 공시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공시할 수 있다.

<의안번호 제2006-16호>

─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 2006. 4. 13

나. 제출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06. 4. 13

2. 개정이유

- 『8. 3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의 차질 없는 추진 등을 위해 토 지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보강이 필요함에 따라
-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한 정원 범위내에서 공무원 정원의 효율 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정원의 조정

- 공무원정원 : 677명 → 680명 (8. 31 부동산대책관련업무: 3명)
- 집행기관의 정원 : 663명 → 666명(증 3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4명(현행과 같음)
- 나. [별표]의 정원관리기관별 두는 직급별 정원 조정

4.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제108조,「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토지관련 업무를 위한 정원승인통보: 도 행정과-946(´06. 1. 20)
- 예산조치 : 추가경정예산 확보
- 입법예고(706. 1. 31~ 2. 19) : 의견제출 없음.

5. 검토의견

- 동조례안의 추진배경은 모든 주택・토지 매매시 실제 거래가격을 30일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토록 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제」실시와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등과 관련하여 '04년 중단되었던 「개발부담금제」의 부활 및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 허가목적외 이용시「이행장제금」 부과시행과 관련된 조치사항으로 판단되며
 - 또한, 2005년. 8월 개발완료되어 적용되고 있는 「토지관리 정보시스템」의 운영 등 최근 자치단체에 토지관련 업무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인력충원이 필요하여
 -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시군구에 필요한 인력을 신청토록 한 후 증 원승인(신청: 7급 3명 → 승인 7급 1명, 9급 2명) 통보되어 후속적인 조치 로써 동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기타 조례개정과 관련하여「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6조 제1항, 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는 기구 및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개정시에는 입법예고하여야 하며, 입법예고시에는 경비를 나타내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행하여 한 사실이 확인되었음.
 - 그러나「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 조의 2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 영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기본인력 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간의 연간계획으로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군수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고, 군수는 도지사와 협의하기 이전에 기본계획을 당해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2004. 12. 18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유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 필요함.

※ 기본인력계획수립일: 2006. 2. 20 도지사 협의요청일: 2006. 2. 22

6. 참고자료

□ 정원관리기관별 두는 직급별 정원 조정: 별표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1101 4	0	п
					소계	기술센터	보건소	사업소	인법	면
총 계		680 (677)	265 (262)	14	134	61	73	64	45	158
정 무 직		1	1							
일반직	소계	534 (531)	219 (216)	8	78	23	55	42	40	147
	4급	2	1	0	1	1	0	0	0	0
	4~5급	2	1	0	1	0	1	0	0	0
	5급	31	11	3	2	1	1	3	1	11
	6급	143	63	3	10	5	5	11	12	44
	7급	165 (164)	80 (79)	2	25	10	15	13	12	33
	8급	127	49	0	35	5	30	9	10	24
	9급	64 (62)	14 (12)	0	4	1	3	6	5	35
별정직	소계	17	1	0	16	0	16	0	0	0
연구사		4	1	0	2	2		1		
지도직	소계	32	0	0	32	32	0	0	0	0
기능직	소계	92	43	6	6	4	2	21	5	11

□ 거창군 부동산 관련 업무담당공무원 증원내용

○ 거창군 연간 부동산 관리건수 : 295,998건 ※자료발췌: 건교부

- 필지수 : 252,031 필지 - 건물수 : 31,967동(무허가 건물 제외)

※ 1일 부동산매매 검인건수: 12건

○ 산출(필요)인원수 : 3명 **※ 현 담당 인원수 : 0.2명**

- 산정기준 : 연간 부동산 관리건수를 기준으로 인원산출

· 10만건 미만 : 1명, · 10만건~20만건 미만 : 3명

· 30만건~40만건 미만 : 4명, · 40만건 이상 : 5명

○ 증원신청 인원수 : 3명 ⇒ 승인 공무원수 : 3명

○ 정원 증가에 따른 소요예산 ⇒ 117,834천원

- 7급 15호봉(1명) : 48,704천원 , 9급 10호봉(2명) : 69,130천원

※ 호봉 적용 : 직급별 평균호봉 적용

<의안번호 제2006-17호>

- 거창군이장의 임무와 실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 2006. 4. 13

나. 제출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06. 4. 13

2. 개정이유

○ 이장 업무 수행에 따른 최소한의 대책 보상과 사기를 진작함으로 써 이장의 안정적 업무수행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이장의 사기진작 조항 신설(안 제6조).
 -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 제공
 - 단체보험 가입
 - 모범이장의 선발 및 표창 : 연 2회
 - 장기 우수이장 국내외 연수 : 연 2회
 - 체육·수런대회(군단위): 연 1회

4. 참고사항

- 이·통장연합회, 도지사 간담회시 건의(´05. 10. 14)
- 제24차 경남도 시장·군수협의회 의결사항(´05. 12. 2)
- ○「이·통장 단체상해보험」제도 시행계획 통보(´05. 12. 28)
- 예산조치 : 추가경정예산 확보
- 입법예고('06. 2. 17 ~3. 9) : 의견 1건 접수
 - 의견내용 : 표창 2회 → 1회, 연수 2회 → 1회

5.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의 최 일선 조직인 이장들의 활동에 필요한 물 품제공, 활동중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비한 단체보험가입 등을 추진하여 이장의 안정적 업무수행 및 최소한의 사기진작책을 강구하 기 위하여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 개정조례안 제6조의 신설은 2005년 12월 2일 제24차 경상남도 시장·군수협의회시「이·통장 단체상해보험」제도 시행이 안건으로 채택되어 2006년부터 시행, 결정한 후 2005년 12월 28일 경상남도로부터 본제도의 시행계획 통보(행정과-14624호)에 의해 조문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와 동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예고 사항 등을 철저히 이행하여 상위법령저촉사항이나 관련규정에 별다른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 또한 동 개정조례안은 예산상의 문제를 수반하지만 도내 전시군의 이·통장에 관한 공통사항으로서 개정조례 시행시 이장의 각종 사건사고시 최소한의 보상 등이 가능해 이장의 사기진작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봄.
 - ※ 기 예산편성 : 20,000천원(거창군 이장가족 한마음 체육행사)

- 그리고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개진으로써 모범이장의 선발 및 표창 횟수(2회→1회)와 연수 횟수(2회→1회)에 대한 변경을 요구하는 의견이 접수되었으나 집행부에서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것과 배치된 부분으로 판단하여 미반영한시항이 있었으나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우수 이장 국·내외 연수부분은 대상자 선정, 소요예산 및 규모 등 시행방법에 대하여 실질적인 운영세칙을 마련하여야 할 것 으로 판단되며 별도의 설명이 필요함.

6. 참고자료

□ 소요예산 : 40,472천원

		1이다				
구 분	인 원	1인당 보험료	계	도비 (15%)	군비 (85%)	비고
사업비	266명	179,000원	47,614	7,142	40,472	

[※] 도비는 기확보 통보됨.

□ 보장내역 및 1인당 보험료 (추정)

구 분	지급	사유	지급 금액	비고
보장내역	재해 사망 (산재,교통		1억원	
	재해 장해시	100%~3%	1억원~300만원	
	암진단 확 피부암 진 경계성종(단시	2,000만원 200만원 400만원	
	질병사망, 뇌	졸증 진단시	1,000만원	
	급성심근경색	진단시	1,000만원	
	상해 치료비		100만원 한도 본인 부담금	
보험료	1인당 월 부담	· 남금액	14,920원	
	1인당 연 부담	 금액	179,000원	